

원스토어(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03월 29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원스토어(주) 10층 대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방역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장소 변경 발생 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3. 회의의 목적사항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 승인(안)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안) (후보자 이재환)
- 제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 (후보자 이정안, 송재승)
- 제5호 의안 : 정관 변경(안)

※ 후보자들의 관한 사항 및 정관 변경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직접행사 (본인참석)

- 지참물 : 주주총회 참석장, 주주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나. 간접행사 (대리인참석)

- 지참물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안내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동봉한 주주총회 참석장과 함께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임하실 때에는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 날인한 위임장 및 위임인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주주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발열 등 이상 증상 시 회사에서 지정하는 별도 장소에서 총회에 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14일

원스토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재 환 (직인생략)

[별첨1]

제 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사내 이사	이재환 (65.05.02)	- 원스토어(주) 대표이사	이사회	계열회사 임원	없음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별첨2]

제 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타 비상무 이사	이정안 (68.06.26)	- 네이버(주) i2 책임리더	이사회	없음	없음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구분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 와의관계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타 비상무 이사	송재승 (79.03.28)	- SK스퀘어 MD	이사회	최대주주의 임원	없음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없음	없음		

[별첨3]

제 5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현행	변경(안)
제10조 (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전환우선주식은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하며, 전환우선주식의 총 수는 500만주 이내로 한다. ②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배당율에 따른 금액을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③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우선배당율에 따른 배당금에 따른 우선배당을 하고, 배당 예정 금액에 잔여이익이 있으면 전환우선주식과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특정 사업연도에 우선배당율에 따른 배당금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않는다. ⑤ 회사가 청산될 때 전환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분배비율로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⑥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후 남은 잔여재산이 있어 이를 분배할 경우, 전환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⑦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전환우선주식으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⑧ 전환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	제10조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 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1조 제4항을 준용한다.

<u>다.</u> <u>⑨ 전환우선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u> <u>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u> <u>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u> <u>3. 전환우선주식이 회사가 기업공개가 완료될 때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공개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u> <u>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u> <u>5. 주주의 전환 청구 전에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액, 이하 같음)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등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전환우선주식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 발행시의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을 조정한다.</u> <u>6. 회사의 분할,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또는 자본의 감소("합병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합병 등의 직전에 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 간주된 보통주식에 분배되었을 수량의 회사(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의 승계회사, 모회사 등)의 주식, 기타 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은 조정되며, 회사는 그러한 합병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합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u>	
---	--

7. <u>전환우선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에는,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상응하여 조정되고,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전환하지 아니하고 행사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u> ⑩ <u>전환우선주식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u>	
---	--